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小考

睦 延 均

〈KORSTIC 特許情報部長〉

있는 言語上의 障害도 輕減될 수 있을 것이다.

I. 머리말

全世界的으로 特許制度를 採用하고 있는 나라
數가 120余個國으로 이들 國家들로부터 特許公
報類를 發行하여 權利附與의 內容과 그의 技術
內容을 公表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公表되는 內
容에 대해서는 各國마다 制度의으로 特許分類를
設定하고 分類의 附與를 義務化하고 있어서 特
許文獻의 整理, 檢索에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
다. 그런데 世界各國에서는 自國特有의 特許分
類를 使用하고 있어서 近來와 같이 技術交流의
國際化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外國特許文獻檢索
의 必要性이 增大하여 가고 있어서 많은 不便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各國에서는 國際的으로 統一된 特許分
類를 使用하여야 될 것이 要望되어 이와 같은
實情을 감안하여 世界各國이 共通的으로 採用될
수 있는 目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國際特許分
類(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로서 現在 프랑스, 西獨, 日本, 소련,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등의 國家
들은 IPC를 唯一의 特許分類로 使用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밖에 50여개국들이
自國의 特許分類와 併記하고 있거나 혹은 IPC
만을 使用하기 위한 準備段階에 있다.

이와 같이 IPC를 使用하게 됨으로써 世界各
國의 特許文獻에 대한 共通言語에 의한 檢索이
可能하여질 것이며, 各國間에 큰 부담이 되고

2. IPC의 由來

經濟, 社會, 文化 等의 分野에서 歐州의 統合
을 目的으로 하는 歐州評議會(The Council of
Europe)가 1949年 8月 3日에 正式으로 發足,
그후 同諮詢會議(The Consultative Assembly)
에서 歐州特許廳設立에 대한 計劃案을 提出하게
되었는데, 이 問題의 勸告를 研究하여 審議結果
를 報告토록 하기 위해 全締約國의 政府에 의한
特許專門家委員會(The Committee of Experts
on Patents of the Council of Europe)를 創
設하게 되었고, 同委員會에서 歐州特許廳設立計
劃案의 審議過程에 共通分類體系의 作成作業을
推進하기 위한 作業部會를 만든 것을 決定하고,
이 作業部會의 最初會合이 1952年 1月 15日 Stra
asbourg에서 開催되었다. 이 會合에서는 共通分
類體系를 作成함에 있어서 利用者の 要求를 만
족케 할 수 있는 機能別 分類 및 產業分野別내
지는 用途分類가 同時에 可能토록 하기 위한 結
論을 얻게 되었고 1952年 7月에 特許專門家委員
會와 作業部會와의 合同會合에서 IPC에 관한
草案이 審議되고, 또한 各 締約國에서는 義務的
으로 國際特許分類를 採用토록 하여 分類體系의
發展을 도모토록 할 것을 決定, 이를 받아들여
서 「特許의 國際分類에 관한 歐州條約」(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Patents for Invention)이

表 1. 'IPC第3版(Int.Cl³)의 分類項目數(構成)

Section	Class數	Sub-class數	Main-group數	Sub-group數	全group數
A	15	80	1,017	5,487	6,504
B	34	161	1,702	11,974	13,676
C	19	89	1,088	9,649	10,737
D	8	38	343	2,195	2,538
E	7	30	321	2,676	2,997
F	17	97	1,019	5,837	6,856
G	13	75	622	5,238	5,860
H	5	47	481	5,789	6,270
計	118	617	6,593	48,845	55,438
Int.Cl ² 와의 比較	+ 2	+ 3	+ 124	+ 3,878	+ 4,002

1954年12月19日에 調印되고 1955年 8月 1日을 기하여 發効하게 되었으며, IPC의 作成作業이 進行되어 1968年 9月 1日에 國際特許分類 第1版이 發効하게 되었다.

그리고 IPC를 歐州評議會로부터 分離시켜 効率的인 世界規模로서 運營하여 나아갈 것을 目的으로 하여 1971年 3月 24日에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Strasbourg協定」(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PC)이 調印되고 1975年 10月 7日부터 發効하게 되었다. 이 協定에 의해 IPC同盟(IPC Union)이 創設되었으며, 이 同盟의 發足과 더불어 IPC에 관한 業務의 執行權限은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갖게 되었다.

3. IPC의 改正

時代의인 變遷에 따라 技術의 內容도 變革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特許分類는 늘 이에 關聯하여 技術發展에 適合하게끔 改正되지 않으면 特許分類의 機能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改正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點을 감안하여 IPC에서는 5年마다의 改正期를 定하고 그의 改正을 檢討하고 있다.

現行 IPC는 第1回의 改正期를 거쳐 1975年 1月 1日부터 第二版「略號=Int.Cl²」이 使用되었으며, 第2回의 改正期를 거쳐 1980年 1月 1

日부터 第三版「Int.Cl³」이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IPC의 改正作業은 作業部會(Working Group), 運營委員會(Steering Committee), 專門家委員會(Committee of Expert)의 3段階를 거쳐서 實施되어 왔다.

現行 IPC는 第1回의 改正期를 거쳐 1975年 1月 1日부터 第二版「略號=Int.Cl²」이 使用되었으며, 第2回의 改正期를 거쳐 1980年 1月 1日부터 第三版「Int.Cl³」이 使用되기 始作하였다.

IPC의 改正作業은 作業部會(Working Group), 運營委員會(Steering Committee), 專門家委員會(Committee of Expert)의 3段階를 거쳐서 實施되어 왔다.

즉 加盟國으로부터 必要條件에 의해 提出된 改正案은 먼저 作業部會에서 技術的인 觀點을 檢討하게 되며, 여기서 採擇된 內容은 그다음 運營委員會에서 大局的인 觀點으로 檢討를 하여 採擇된 改正案은 最終的으로 專門家委員會로 보내 審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이 最終的인 審議結果에 의해 採擇된 改正案은 國際事務局이 同盟國의 當局으로 通告하게 됨으로써 6個月後에는 IPC의 改正으로서 發効하게 된다.

이 改正作業에 있어서 IPC同盟의 加盟國은 自國이 メンバー로 되어 있는 作業部會 또는 各委員會에 出席하여 IPC 改正作業에 參加를 하게 된다. 그런데 1979年以後는 이와 같은 機構의

一部が修正되어 IPC改正의 檢討는 「特許情報에 관한 常設委員會」에서 취급하기로 되었다.

4. IPC의 構成

1) IPC의 体系와 表記法

特許의 對象이 되고 있는 全產業分野를 技術的 見地에서 A~H의 Alphabet大文字로 된 8個의 Section과 Section title 그리고 Section을 區分한 Subsection, 이 Subsection은 Subsection title만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Sub-section을 區分하기 위해 Class와 Subclass가 從屬되어 있고, Subclass를 細分하기 위해 Main-group과 Subgroup으로 된 2個의 種目으로 体系를 이루고 있다(表 1 參照).

다음은 Section과 Subsection의 區分을 나타낸 表이다.

Section	Subsection
A 生活必需品	農業 食料品 및 담배. 個人用品 및 家庭用品 健康 및 娛樂
B 處理·操作	分離와 混合 成形 印 刷 運輸
C 化學 및 冶金	化 學 冶 金
D 纖維 및 종이	纖維 및 그밖에 分類되지 않는 可動性 材料 종 이
E 固定構造物	建造物 鑄 業
F 機械工學；照 明；加熱；武 器；爆破	機關 및 펌프 工學一般 照明 및 加熱 武器；爆破
G 物理學	機 器 原子核工學
H 電，氣	電 氣

國際特許分類表中에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必要事項의 指示, 用語의 定義, 規則 등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事項들이 記載되어 있다.

用語解說

國際特許分類表의 展開用語中 자주 使用되고 있는 44個의 用語에 대해 그의 意味 또는 使用方法의 統一을 기하기 위해 解說한 것으로서 分類表의 最初部分에 記載되어 있다.

서브클래스內의 색인(Sub-class Index)

Sub-class內에 展開되고 있는 事項들을 간단히 把握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하는 것으로서, 分類体系의 一部를 構成하거나 分類範圍를 規定하는 것은 아니다.

注(Notes)

展開되고 있는 內容을 보다 더 明確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分類附與方法, 優先, Last Place Rule 등을 指示하거나 用語의 意味를 定義하고 있다.

分類範圍에 대한 注意(Notes on Scope)

分類表의 Sub-class 바로 다음에 記載되어 있으며, 主로 그 Sub-class가 커버하고 있는範圍를 說明하고 있다.

標題語(Guide Heading)

數個의 Main-group을 整理하여 이들이 對象으로 하고 있는 事項들을 簡潔하게 表現하기 위해 整理된 用語로서 Main-group의 바로 上端에 表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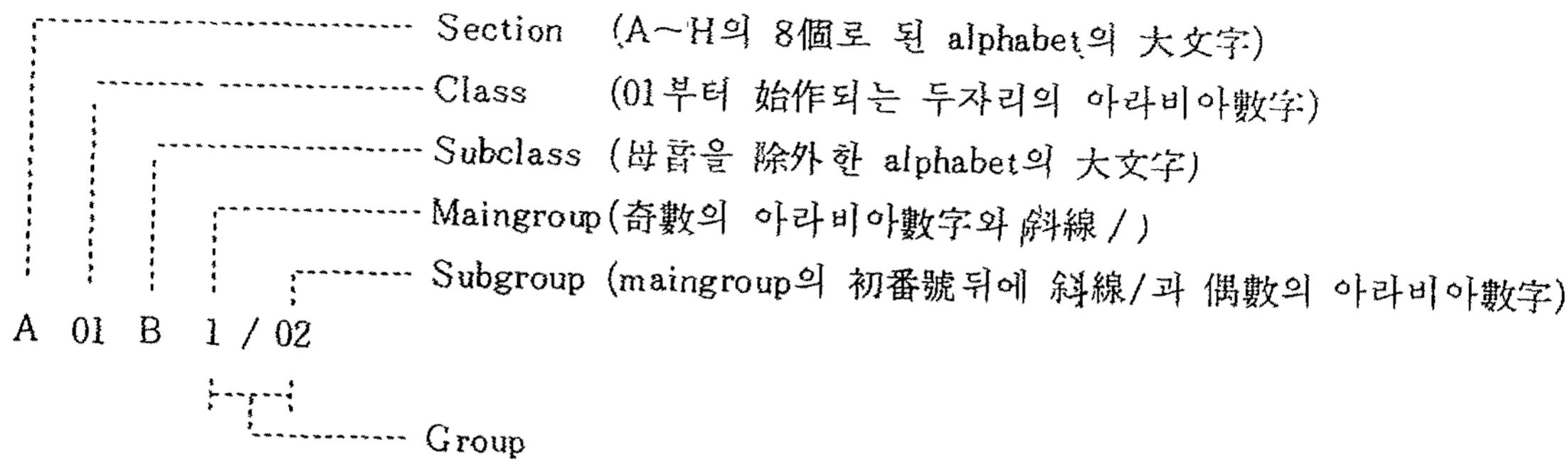
說明(Explanatory Notes)

Section 혹은 Class 등의 比較的 上位인 分類項目部分에 記載되어 있으며, 一般的으로 알 아두어야 할豫備知識, 用語의 定義 등을 說明하고 있다.

參照(Reference)

Class, Sub-class, Guide-heading 또는

〈IPC의 表記例〉



Group의 展開用語에 바로 이어서, 괄호로 둘어
說明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機能을
갖고 있다.

- ① 分類範圍의 限定
- ② 優先
- ③ 案内

Last Place Rule

IPC의 分類表中 一定範圍內에 該當하는 分類
項目이 여러 개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중에서 展開順序가 最後(Last Place)의 分類
項目인 것을 採用하여 分類記號를 부여토록 하
는 規則으로서 이 규칙이 適用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要旨가 明確히 指示되고 있다.

例 C 11 D

Note In sub-groups 9/06 to 9/42, a
compound is always classified in
the last appropriate place.

(Sub-group 9/06~9/42에 있어서의 化合物
은 항상 最後의 適切한 個所에 分類한다.)

First Place Rule

Last Place Rule과는 反對인 경우로서 該當
하는 分類項目이 여라 개 있을 경우 展開順序의
最初(First place)의 것을 採用하여 記號를 부
여토록 하는 規則으로서 Sub-class에서의 適
用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例 C 05

Explanatory Notes

- (1) An ingredient in a mixture of fertilisers, or single fertiliser which contains

more than one of the chemical elements on
which the subdivision into sub-classes is
based, is classified only in the first of the
appropriate sub-classes. Thus, a nitrophosphate
or an ammoniated superphosphate is
classified in C 05 B but not in C 05 C,
magnesium phosphate is classified in C
05 B but in C 05 D, and calcium cyanamide
in C 05 C but not in C 05 D.

(肥料混合物中の 한 成分 혹은 Sub-class에
의 綱分化의 基礎가 되는 化學元素를 2種以上
含有하는 單一肥料는 該當 Sub-class의 最初
에 限해 分類한다. 그러므로 나이트로포스페이
트 혹은 암모니아化 過磷酸石灰는 C 05 B로 分
類되나 C 05 C로는 分類하지 않으며, 磷酸마그네
슘은 C 05 B로 分類되나 C 05 D로는 分類하지 않
고 또한 칼슘시아나마이드는 C 05 C로는 分類되
나 C 05 D로는 分類하지 않는다)

2) 分類부여의 對象이 되는 情報

IPC에서 情報를 分類하는 第一의 目的은 整
理, 檢索을 簡便하게 하자 하는 것으로서, 必要한
경우 整理된 狀態에서 有用한 情報를 檢索코자
할 때 어떠한 것이라도 錯誤 없이 檢索되지 않으
면 안되므로 IPC의 記號부여에 있어서도 曰々
이에 準하여 慎重하게 實施되어야 한다.

먼저 特許明細書에 IPC의 記號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明細書를 分析하여 對象으로 하는 情
報를 抽出해 내야 된다. 그 對象으로 하는 情報
는 發明單位, 參考情報, 相補情報의 3가지 種類
로 區分하게 된다. 이들의 對象情報中 發明單位
에 대한 分類부여는 義務의이며, 參考情報와 相

表 2.

A 01 N 25/00~65/00 Agricultural chemicals
A 61 K 31/00~47/00 Medicinal preparations
C 05 Manufacture of fertilisers
C 07 D Heterocyclic compounds
C 08 F 210/00~297/00 Copolymers, Graftpolymers, Block polymers
C 08 K Use of Inorganic or non-macromolecular organic substances as compounding ingredients
C 08 L Compositions of macromolecular compounds
C 11 D Detergent compositions;

補情報에 대한 分類부여는 任意的인 것으로 되어 있다.

(1) 發明單位 (Invention Unit)

發明單位란 特許明細書에서 發明이 具現化하고 있는 自体, 즉 發明의 目的과 効果를 이루하는 한편 發明의 構成에서 權利情報로서 主張되고 있는 事項 全部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서一般的으로 特許請求權範圍가 發明單位를 構成하게 된다.

(2) 參考情報 (Supplementary Information)

特許明細書의 內容中에는 發明을 構成키 위해前述한 發明單位以外에도 有効하게 利用되는 技術情報가 包含되어 있다.

즉 發明單位는 아니나 技術的으로 注目하여야 할 事項의 技術情報を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소위 參考情報라 말한다.

(3) 相補情報(Complementary Information)

特許明細書에서 採擇된 發明單位가 어떠한 要素로서 構成되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相補情報이다.

相補情報은 現在 表 2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아 化學關係의 7個 Sub-class에 限하여 適用하고 있다. 이들의 Sub-class에는 分類부여를 整理하기 위해 Last Place Rule, First Place Rule 또는 主成分規則의 適用이 義務的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相補情報を 採用하는 分野에는 分類表中의 「Note」 등에서 要旨가 說明되고 있다.

3) 分類記號의 記載方法

IPC의 記載順序는 發明單位, 參考情報, 相補情報의 順으로 明確히 區分하여 記載하게 된다.

먼저 發明單位에 있어서 1個의 發明單位에 複數의 分類記號가 부여되는 경우 또는 複數의 發明單位에 對應하여 複數의 分類記號가 選擇된 경우 對應하는 分類記號를 모두 二重斜線(//)의 앞에 記載하며, 이 경우 가장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分類記號를 제일 먼저 記載하고 그다음은 順次的으로 記載한다.

發明單位가 記載된 다음 參考情報가 있을 경우 二重斜線의 바로 뒤에 記載한다.

그다음 相補情報은 參考情報에 뒤이어 괄호로 묶어서 記載한다. 相補情報은 반드시 發明單位와 關聯시켜 記載해야 한다.

다음에 前述한 內容을 좀더 具體的인 例를 들어 記載過程을 說明코자 한다.

發明單位 2個 C 08 F 210/02,

參考情報 1 " C 08 F 255/04//

相補情報 3 " A 63 C 5/12

(C 08 F 210/02,

210/06,

214/06)

(C 08 F 255/04,

214/06)

① 發明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가장 關련이 깊은 發明單位의 分類記號 C 08 F 210/02를 제일 먼저 記載한다.

② 나머지 發明單位에 대한 記號 C 08 F 255/04를 코미(,)로서 區分 뒤이어 記載한다.

③ 그다음 參考情報와 相補情報가 있으므로 二重斜線(//)을 하고

④ 參考情報에 관한 分類記號 A 63 C 5/12를 記載한다.

⑤ 그다음은 相補情報を 記載하게 되는데 이는 發明單位와 關聯시켜 다음과 같은 순서로 記載한다.

a. 먼저 괄호「」를 열고

b. 最初의 發明單位記號 C 08 F 210/02를 記載하고 코미(,)를 한다음 이에 대한 相補情報 2個가 解當되는데, 이것은 Sub-class까지는

記號가同一하므로同一한部分은省略하고, 다만group部分인 210/06, 214/06만을記載하고괄호를닫는다.

c. 또하나의發明單位인 C 08 F 255/04에 대해서도解當되는相補情報1個가있으므로前述한a,b의순서와같이記載한다.

5. CAPRI計劃

1) 計劃의 目的

各國에서發行되고 있는特許資料들에 있어서現在 IPC를附與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Search file이나資料들에 있어서部分的으로는各國獨自의分類体系에 따라構成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資料나Search file에 있어서 앞으로는IPC를適用하기가容易하다고 볼수있겠으나IPC附與以前에蓄積된資料나Search file을IPC에 의해整理한다는 것은困難한問題로서, 이를實踐하기 위해서는 많은技術關係의人力과資金負擔이뒤따르게될것이며, 또한各國의特許廳이나Search機關들이IPC로서再分類한다하더라도各國에서는同一한努力을하지않으면안되므로많은무리한重複性의作業을遂行하게될것이다.

그러나近來와같이特許分野에서國際間의協力이高潮되어가고있으며특히特許協力條約(PCT=Patent Cooperation Treaty)및이條約에의한많은나라의Search機關에서國際的인Search system의確立이要望되고있는이때再分類에관한問題의國際的인解決은시급한課題로서등장하게되어1975年9月第11回파리同盟執行委員會에서WIPO로부터「國際特許分類에의해再分類된特許文獻의컴퓨터管理에관한最終的草案」CAPRI(Computerized Administration of Patent Documents Reclassified According to the IPC)計劃이提出되었으며, 이것이檢討되어

① WIPO의事務局에INPADOC과必要한協定을締結할것을委任하는일

②再分類의對象을INPADOC과協力特許廳과의協力下에計劃을時急히遂行하여될수있는限빨리特許協力條約(PCT)에서規定하는

Minimum Documentation의範圍까지再分類할것등을勸告하게되었다.

따라서CAPRI計劃은IPC에의한再分類問題의實質的인解決策으로서다음과같은目的을두고있다.

①特許文獻에IPC를附與하는業務를各國特許廳이割當하여實施한다.

②再分類된데이터를중앙에수집하여컴퓨터化된Data Bank를設立한다.

③이상과같이함으로써各國間의重複을避하도록하여各國特許廳및Search機關이이Data Bank에서必要로하는形態로서데이터의提供을받을수있도록한다.

여기서의Data Bank는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內에중앙Data Bank를創立하게되었다.

2) CAPRI計劃에의한再分類對象

WIPO에의한CAPRI計劃의全体的인調整및management下에다시WIPO와INPADOC間에締結된合意事項을基礎로하여INPADOC은國際特許分類로서分類된特許資料의데이터뱅크를創設하게되었으며,CAPRI計劃에의해수집되는特許資料는다음과같다.

①特許協力條約規則34에規定된Minimum documentation의特許資料

②Minimum documentation以外의資料일지라도INPADOC으로Machine readerble形態로서送附되는特許資料

③特許協力條約規則34.1(C)(VI)에規定된英語,프랑스語,獨語로되어있는特許資料도데이터뱅크에입력한다.

6. 맺는 말

最近에이르러工業所有權制度의國際化傾向과더불어이에발맞추어各國은國際特許分類의專用을서두르고있으며모든特許資料는IPC에의해分類,整理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역시이에보조를같이하고IPC의efficiency의運用과basic知識을넓혀서記號부여로부터整理,檢索에이르기까지의보다더원활한活用을위한體系化를구축하고,特

許權에 의한 技術活用을 도모하여 技術報國으로
서의 發展에 이바지하여야 될 것이다.

國際特許分類에 관한 文獻으로는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韓譯版,
英語版, 日語版), IPC를 보다 쉽게 理解하기
위한 IPC Hand Book, 國際特許分類부여의 運
用基準(日本特許廳公報 53-97), 韓國特許分類
表對 國際特許分類 對照表, 特許分類索引(가나

다順으로 된 技術用語에 의한 IPC와 LPC對照
表) 등을 비롯하여 定期刊行物인 特許管理(日本
特許協會刊), 發明(日本發明協會), World Pa-
tent Information(The Commission of the Eu-
ropean Communities & WIPO) 등에서 IPC關
係의 專門的인 記事が 連載되고 있다(文獻;
KORSTIC 所藏).